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 | |
|----------|---------|
| 의안 번호 | 관련 2176 |
|----------|---------|

제안년월일 : 2021년 3월 2일
제안자 : 기획경제위원장

1. 수정이유

- “중요내용”에 대한 정의는 위탁사무의 종료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규칙에 포괄위임하고 있어 “위탁사무의 내용 변경 등”을 “다른 위탁사무의 추가 또는 위탁사무 내용의 전면변경, 기존 위탁사무의 분리와 그 밖에”로 수정해 입법의 구체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고 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중요내용의 변경을 위탁유형의 변경, 다른 위탁사무의 추가 또는 위탁사무 내용의 전면변경, 기존 위탁사무의 분리와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구체화함(안 제2조제6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6호 중 “위탁사무의 내용변경 등” 을 “다른 위탁사무의 추가 또는 위탁사무 내용의 전면 변경, 기존 위탁사무의 분리와 그 밖에” 로 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수정안 |
|--|--|---|
|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5.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u><신설></u></p> |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5. (현행과 같음)</p> <p>6. “중요내용”이란 위탁유형 변경, <u>위탁사무의 내용변경 등</u>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p> |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 5. (개정안과 같음)</p> <p>6. “중요내용”이란 위탁유형 변경, <u>다른 위탁사무의 추가 또는 위탁사무 내용의 전면 변경, 기존 위탁사무의 분리와 그 밖에</u>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p> |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중요내용”이란 위탁유형 변경, 다른 위탁사무의 추가 또는 위탁사무 내용의 전면 변경, 기존 위탁사무의 분리와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4조의3제1항 중 “경우에는”을 “경우와 위탁사무의 중요내용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